www.noinboho.or.kr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보건복지부

노인보호전문기관

"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세대가 행복합니다."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. 그러나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생활시설 수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한 노인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생활시설 학대 추이 : ('08) 55건(2.3%) → ('13) 251건(7.1%), 4.5배 이상 증가 (보건복지부·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(2013). 노인학대 현황보고서.)

노인학대,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"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**노인학대**"

- 실버타운, '노년의 안식처' 혹은 '빛 좋은 개살구' 〈SBS TV 2014. 12. 23〉
- 인권위, '폭행피해 방치' 노인요양시설 업무정지 권고 〈한국경제 2014. 10. 28〉
- 학대 받는 노인 10명 중 6명, 수년간 지속적 피해 입어 〈경향신문 2014. 10. 02〉
-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5년 새 5배 급증 〈연합뉴스 TV 2014. 08. 25〉
- 치매노인 학대 5년 새 3배 〈헤럴드경제 2014. 05. 29〉
- 노인요양시설 치매노인 테이프로 결박한 복지사 검거 〈국민일보 2014. 03. 19〉

※ 대부분의 시설은 노인인권보호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노인학대,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

노인학대란?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〈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〉

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-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-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-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
- 흥분,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
-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-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-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-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

방임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대소변 냄새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이 방치됨
-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
-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기방임)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Q1 노인학대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,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(24시간 상담) 1577-1389 또는 129

신고자의 비밀보장 : 신고인의 **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**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

Q2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Q3 노인학대, 처벌규정이 있나요?

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: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

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➡ 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**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/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· 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,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➡ **5년 이하는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**
노인을 위하여 증여,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➡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**
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 ➡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**
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➡ **300만원 이하 과태료**
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➡ **200만원 이하 과태료**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**전국 17개 시·도**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
• 이동상담 실시, 언론홍보, 학술행사, 캠페인, 카툰 및 사진전시회

홍보

교육

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
• 노인학대 예방교육
• 노인인권 교육

노인인권 보호사업
• 노인인식개선사업
• 효행교육

노인인권 보호

상담

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
• 전문상담 서비스
• 일시보호, 의료지원
• 법률지원, 사회복지서비스 연계

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• 긴급보호 및 의식주 제공
•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
※보호기간 3개월 외 1개월 이내 연장가능

쉼터

협력체계 구축

협력체계 구축사업
• 자문위원회,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•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
• 후원, 자원봉사 사업

여러분의 관심으로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노인학대 신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24시간 상담 **1577-1389** 또는 **129**

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